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94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박지혜 · 이주희 · 황정아
채현일 · 이건태 · 허성무
김남근 · 박선원 · 김현정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환경에 맞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하는 에너지자립설비(냉난방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개량·보수

⑨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에너지자립설비를 통하여 생산된 전력을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 ⑧ (생략)
<신 설>

립설비(냉난방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개량·보수

4. -----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에너지자립설비를 통하여 생산된 전력을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